

요양기관 의약품 청구 가이드

(구입약가 · 구입수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

Contents

I. 구입약가 사후관리 · 5

01. 개요 · 6

1. 도입배경 · 6
2. 구입약가 사후관리의 정의 · 7
3. 법적근거 · 7
4. 업무처리절차 · 8

02. 구입약가 산정 및 청구방법 · 9

1. 산정기준 · 9
2. 청구방법 · 13

03. 구입약가 확인 · 17

1. 구입약가 정기 확인 절차 · 17
2.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 21

04. 정산 및 이의신청 · 42

1. 구입약가 정산 · 42
2.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정산심사 대상 확인 · 43
3.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정산심사 결과 확인 · 44
4. 이의신청 · 45

II. 구입수량 사후관리 개요 · 51

01. 정의 · 52

02. 불일치 사례 · 53

III. 자주하는 질문(FAQ) · 55

부록 · 65

01. 사전가중평균가 · 66

02. 의약품 입고내역 확인 · 67

03. 관련 규정 · 68



요양기관 의약품 청구 가이드 (구입약가 · 구입수량)

I

구입약가
사후관리

I

구입약가 사후관리 개요

01

개요

1. 도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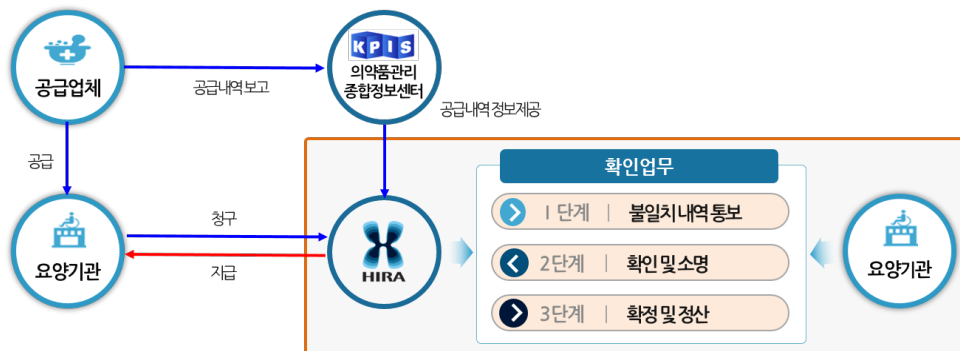
- **실거래가 상환제도**: 1999년 11월 약품비 지급전에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를 근거로 전산심사 실시
- **사전심사 ▶ 사후관리로 변화**: 2010년 10월 도입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하에서는 2008년부터 공급업체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의무를 없애고, 실구입가를 확인하는 체계로 전환
- **(현행)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2014년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폐지하였으나, 약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구입약가 사후관리 필요함.

그 간의 약가제도 변화

- '10. 10. 1.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10. 2.)에 따라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약가 조정(인하) 목적
 -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상한가-구입가)*70%} 지급
- '11. 2. 28. 저가필수의약품 등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
 -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마약, 희귀의약품 해당
- '12. 2. 1.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유예(2년간)
 - '12. 4. 1. 약가일괄인하로 '12. 2.~'14. 1.까지 유예
- '14. 2. 1.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재시행
- '14. 9. 1.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시행
 - 입원 약품비를 포함한 총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개선

2. 구입약가 사후관리의 정의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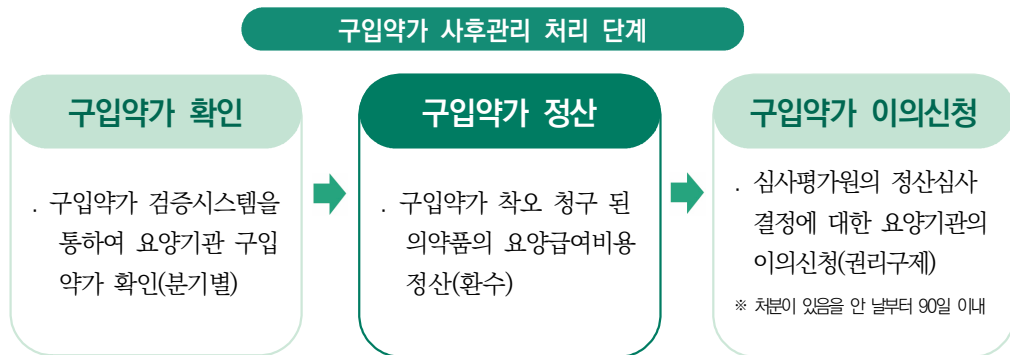
-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품비를 심사·지급한 후 공급업체의 보고내역으로 산출한 공급단가(분기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의 청구단가가 상이한 건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구입약가를 확정, 정산하는 과정

※ 불일치 청구 건 정산·계도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단가와 청구단가가 상이한 경우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따라 현지조사 의뢰

3. 법적 근거

- 「약사법」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 정지 등), 제81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98조(과태료)제1항
- 「약사법 시행규칙」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87조(이의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방법 및 절차)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제2장(약제에 대한 비용의 결정 등)
-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

4. 업무처리절차



1. 산정기준

가. 관련근거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2조 (구입약가의 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4호, 2014. 9. 1.)

나.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 적용대상:
 - ▶ 대상의약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등재 의약품
 -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약국
- 제외대상:
 - ▶ 방문당 수가 산정기관(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정액수가, DRG 등
 - ▶ 한약제제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중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다. 가중평균가(구입약가) 산정방법

- 의약품별 분기 가중평균가(분기별 구입한 의약품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
 -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
 - 분기별 구입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의약품 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계속하여 구입약가로 산정
 - 처음 구입하여 사용한 약제에 대하여는 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 범위에서 최초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산정되어 적용 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

라. 분기 가중평균가 적용기간

의약품 구입분기	구입약가 적용기간 (진료일)
1/4분기 (1월 ~ 3월)	5월 1일 ~ 7월 31일
2/4분기 (4월 ~ 6월)	8월 1일 ~ 10월 31일
3/4분기 (7월 ~ 9월)	11월 1일 ~ 1월 31일(다음년도)
4/4분기 (10월 ~ 12월)	2월 1일 ~ 4월 30일(다음년도)

마. 세부 산정방법

1) 매분기마다 의약품구입이 발생한 경우

- 매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

약가 청구 산정 예시

의약품 구입내역				의약품 구입내역		
구입일	구입분기	구입단가	구입량	구입일	단가	내 용
2025년 4월 2일	2/4분기	550원	100개	2025년 8월 1일	523원	2025년 2/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 ^{주1)}
5월 3일		500원	120개	~10월 31일		
2025년 7월 5일	3/4분기	600원	100개	2025년 11월 1일	560원	2025년 3/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 ^{주2)}
8월 20일		520원	100개	~2026년 1월 31일		
2025년 10월 1일	4/4분기	600원	200개	2026년 2월 1일	583원	2025년 4/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 ^{주3)}
11월 1일		550원	100개	~4월 30일		

주: 1. 2025년 2/4분기 가중평균가: $\{(550 \times 100) + (500 \times 120)\} / (100 + 120) = 523$ (원미만 4사5입)

2. 2025년 3/4분기 가중평균가: $\{(600 \times 100) + (520 \times 100)\} / (100 + 100) = 560$ (원미만 4사5입)

3. 2025년 4/4분기 가중평균가: $\{(600 \times 200) + (550 \times 100)\} / (200 + 100) = 583$ (원미만 4사5입)

2) 매분기마다 의약품구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수개월 분을 일시에 구입)

- 의약품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적용

약가 청구 산정 예시

의약품 구입내역				청구내역		
구입일	구입분기	구입단가	구입량	진료월	단가	내 용
2025년 4월 10일	2/4분기	90원	200개	2025년 8월 1일 ~10월 31일	91원	2025년 2/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 ^{주1)}
5월 5일		92원	500개			
6월 1일		90원	100개			
2025년 7월~9월	3/4분기	구입내역 없음		2025년 11월 1일 ~2026년 1월 31일	91원	2025년 2/4분기 가중평균가 계속 적용
2025년 10월 10일	4/4분기	100원	500개	2026년 2월 1일 ~4월 30일	102원	2025년 4/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 ^{주2)}
11월 25일		105원	250개			

주: 1. 2025년 2/4분기 가중평균가: $\{(90 \times 200) + (92 \times 500) + (90 \times 100)\} / (200 + 500 + 100) = 91$ (원미만 4사5입)
 2. 2025년 4/4분기 가중평균가: $\{(100 \times 500) + (105 \times 250)\} / (500 + 250) = 102$ (원미만 4사5입)

3) 요양기관이 처음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

-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최초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

약가 청구 산정 예시

의약품 구입내역				청구내역		
구입일	구입분기	구입단가	구입량	진료월	단가	내 용
2025년 7월 7일 (최초 구입)	3/4분기	550원	300개	2025년 7월 7일 ~10월 31일	550원	최초 구입한 구입단가 적용
7월 14일		500원	200개			
8월 3일		700원	100개	2025년 11월 1일 2026년 ~1월 31일	543원	2025년 3/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 ^{주1)}
9월 14일		450원	100개			
2025년 10월 7일	4/4분기	600원	400개	2026년 2월 1일 ~4월 30일	583원	2025년 4/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 ^{주2)}
11월 14일		550원	200개			

주: 1. 2025년 3/4분기 가중평균가: $\{(550 \times 300) + (500 \times 200) + (700 \times 100) + (450 \times 100)\} / (300 + 200 + 100 + 100) = 543$ (원미만 4사5입)
 2. 2025년 4/4분기 가중평균가: $\{(600 \times 400) + (550 \times 200)\} / (400 + 200) = 583$ (원미만 4사5입)

4) 재고량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의약품을 새로 구입한 경우
(단가변경)

- 요양기관이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량이 없는 의약품은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처음 구입하여 사용한 의약품으로 보아 산정
- 상한금액 범위에서 새로 구입한 가격으로 분기 가중평균가가 산정되어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

약가 청구 산정 예시

의약품 구입내역				의약품 구입내역		
구입일	구입분기	구입단가	구입량	진료월	단가	내 용
2025년 7월 7일	3/4분기	550원	300개	2025년 11월 1일 ~11월 13일	543원	2025년 3/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 ^{주1)}
7월 14일		500원	200개			
8월 3일		700원	100개			
9월 14일		450원	100개			
2025년 10월 7일	4/4분기	600원	400개	2025년 11월 14일 ~2026년 1월 31일	550원	11월 14일 변경된 구입단가 적용 (11월 14일 이전 구입분 모두 소진)
11월 14일(단가변경)		550원	200개			
12월 7일		500원	200개			
12월 20일		550원	200개	2026년 2월 1일 ~4월 30일	533원	단가변경 이후 2025년 4/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 ^{주2)}

주: 1. 2025년 3/4분기 가중평균가: $\{(550 \times 300) + (500 \times 200) + (700 \times 100) + (450 \times 100)\} / (300 + 200 + 100 + 100) = 543$ (원미만 4사5입)

2. 2025년 4/4분기 가중평균가: $\{(550 \times 200) + (500 \times 200) + (550 \times 200)\} / (200 + 200 + 200) = 533$ (원미만 4사5입)

◆ 단가변경 충족요건

- 의약품을 구입한 시점에서 해당 의품을 소진하였거나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량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새로 구입하는 의약품의 가격이 기존 구입단가와 다른 단가여야 함

◆ 단가변경 확인서류

- 거래명세서(반품), 의약품 수불대장 및 재고관리대장(요양기관장 직인 날인) 등 재고량이 없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이 경우 재고량이 없게 된 일자보다 새로운 단가로 의품을 구입한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가 더 최근이어야 함

2. 청구방법

가.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나. 적용대상

구 분	내 용
요양기관 종별	소종별
청구매체	포털, EDI, 디스켓
보험자 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명세서	의과, 치과, 약국 명세서(행위별 수가만 해당)
대상의약품	보험 등재약(100/100, 비급여의약품 등 제외)

다.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구 분	내 용
단 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단가를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는 1원으로 기재
1회 투약량	의약품의 경우 1회 투여한 량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 기재
1일 투여량, 투여(실시)횟수	의약품인 경우 1일 투여횟수를 기재(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 기재
총 투여일수 실시횟수	총 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기재
금 액	의약품 단가에 1회 투약량, 일투, 총투를 곱한 금액(원미만 4사5입)
변경일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신설되거나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 또는 신설된 단가의 최초 투여(실시)일자를 기재

라. 세부 작성요령(포털, EDI 등 전산청구 기준)

1) 입원기간 중 분기 가중평균가의 적용시점이 달라지는 경우

- 장기입원 등으로 인하여 입원기간 중에 투약한 의약품의 분기 가중평균가의 적용시점이 달라지는 경우
 - 실제 의약품 투약일에 해당하는 분기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청구하여야 하며, 반드시 변경일란에 실제 투약일자를 기재

약가 청구 산정 예시

☞ 의과 진료내역

- 2026년 1월 1일 최초 입원한 환자에게 데놀정을 1월 5일부터 15일, 2월 6일부터 10일간 원내 투약하고 청구하는 경우

☞ 의약품 구입내역

- 매분기마다 데놀정을 구입함
- 단가(분기 가중평균가)
2025년 3/4분기: 135원, 2025년 4/4분기: 162원

[명세서 상병내역]

상병명	분류기호	수술	진료과목	상해외인	특정기호	요양개시일
						최초입원일
상세불명의 장폐색증	K567	유	외과			20260101
급성 복증	R100	유	외과			20260101

[진료내역]

항	목	코드(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주3)}
03	01	643600900 (데놀정)	162	135 ^{주1)}	1	2	15	4,050	20260105
03	01	643600900 (데놀정))	162	162 ^{주2)}	1	2	10	3,240	20260206

- 주: 1. 1월 5일 투약한 경우 적용단가는 2025년 3/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
 2. 2월 6일 투약한 경우 적용단가는 2025년 4/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
 3. 명세서의 요양개시일과 실제 투약일이 다를 경우 변경일자란에 실제 투약일 기재

2) 요양기관이 처음 의약품을 구입하여 투약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처음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의약품의 경우

- 최초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하되, 반드시 변경일자란에 최초 투약일자를 기재

약가 청구 산정 예시

☞ 의과 진료내역

- 2025년 6월 1일~11월 10일까지 장기 입원한 환자에게 6월 1일, 8월 4일, 11월 3일 박테로신 연고를 원내 투약하고 청구하는 경우

☞ 의약품 구입내역

- 2025년 5월 5일 박테로신 연고를 최초 구입(단가 1,660원, 10개)하고, 5월 17일(단가 1,700원, 20개), 6월 15일(단가 1,710원, 100개), 7월 21일(단가 1,810원, 100개)에 구입한 경우

[명세서 상병내역]

상병명	분류기호	수술	진료과목	상해외인	특정기호	요양개시일 최초입원일
상세불명의 피부염	L309		신경외과			20250601
다발성 찰과상	T009		신경외과			20250601

[진료내역]

항	목	코드(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주4)}
03	02	671700483(박테로신연고)	2,146	1,660 ^{주1)}	1	1	1	1,660	-
03	02	671700483(박테로신연고)	2,146	1,705 ^{주2)}	1	1	1	1,705	20250804
03	02	671700483(박테로신연고)	2,146	1,810 ^{주3)}	1	1	1	1,810	20251103

- 주: 1.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한 의약품의 청구단가는 분기 가중평균가 생성되기 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최초 구입가격인 1,660원 적용 청구
2. 8월 4일 투약한 경우 청구단가는 2분기 가중평균가(1,705원) 적용 청구
* 2분기 가중평균가 = $\{(1,660 \times 10) + (1,700 \times 20) + (1,710 \times 100)\} / (10 + 20 + 100)$
3. 11월 3일 투약한 경우 청구단가는 3분기 가중평균가(1,810원) 적용 청구
* 3분기 가중평균가: $(1,810 \times 100) / 100$
4. 명세서의 요양개시일과 실제 투약일이 다를 경우 변경일자란에 실제 투약일 기재

3) 의약품 상한금액이 인화된 경우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상한금액이 인하되어 분기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보다 큰 경우 청구단가는 상한금액으로 청구

* 상한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청구할 경우 접수단계에서 전산 자동 조정

약가 청구 산정 예시

☞ 의과 진료내역

-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원한 환자에게 12월 1일 놀텍정10밀리그램을 원내 투약하여 청구한 경우

☞ 의약품 구입내역

- 2025년 2/4분기 가중평균가는 1,100원이고 6월 이후 구입내역이 없는 경우
- (예시) 놀텍정10밀리그램은 2025년 12월 1일자로 상한가가 1,131원에서 1,088원으로 인하함

[명세서 상병내역]

상병명	분류기호	수술	진료과목	상해외인	특정기호	요양개시일
						최초입원일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0		외과		V193	20251001
상세불명의 위염	K297		외과			20251001

[진료내역]

항	목	코드(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3	01	641702920(놀텍정10밀리그램)	1,131	1,100	1	1	5	5,500	-
03	01	641702920(놀텍정10밀리그램)	1,088	1,088 ^{주1)}	1	1	10	10,880	20251201 ^{주2)}

주: 1. 12월 1일 투약한 경우 2분기 가중평균가가 1,100원임에도 불구하고, 12월 1일 상한가가 인하되었으므로 청구단가는 상한가가 됨(가중평균가로 청구시 접수단계에서 전산 자동 조정)

2. 명세서의 요양개시일과 실제 투약일이 다를 경우 변경일자란에 실제 투약일 기재

1. 구입약가 정기 확인 절차

가. 개요

- 분기단위로(3개월)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한 의약품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제출한 서류와 공급업체 확인을 통해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 확인
 - 심사평가원장이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통해 선정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점검 및 확인 요청(웹메일, 웹팩스, SMS 등으로 안내)
-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공급내역을 점검·확인 후 제출(증빙자료는 반드시 업무포털로 업로드)

구입약가 정기확인 세부 업무처리절차



나. 관련근거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
 - 심사평가원장은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및 공급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운영
 - 필요한 경우 서면 및 현지확인 방법으로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확인

다. 구입약가 정기확인 순서

1) 구입약가 확인대상

- 요양기관 청구단가 > 분기별 공급단가
: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 중 공급 단가보다 높게 청구된 의약품

2) 통보방법 및 자료제출

- 통보방법
 - 업무포털 공지사항 게시 [OO년 O차수 구입약가 정기확인 안내]
 - 공문 발송 [OO년 O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 확인 요청]
 - 웹메일, 웹팩스 및 SMS 통보
(관할 요양기관 해당 본원·본부별 통보)

○ 자료제출

- 1차 통보 10일, 2차 통보 7일
- ※자료 미제출 기관에 한하여 2차 통보 진행

3) 접수마감

- 2차 통보 처리기한 마감시점에서 접수마감
- ※마감 후 요양기관은 자료 입력 및 수정 불가능

4) 요양기관 주요 확인내용

-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단가와 공급단가(분기 가중평균가) 확인
- 의약품 별 구입관련 거래명세서(구입처, 일자, 수량, 금액, 단가 등)등 확인하여 분기 가중평균가와 비교 확인
- 공급신고 착오인 경우 증빙자료 첨부 후 단가 등 수정

5) 증빙자료

요양기관 확인결과	내 용																																		
공급신고 맞음	공급업체 보고내역(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등)이 모두 맞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청구를 잘못된 경우 공급내역 현추가 현삭제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순번</th><th rowspan="2">구입처</th><th rowspan="2">사업자 등록번호</th><th rowspan="2">약품명 (표준코드)</th><th rowspan="2">구입 분기</th><th rowspan="2">적용규격</th><th colspan="3">1차 가중평균가</th><th>요양기관 확인결과</th></tr> <tr> <th>공급수량</th><th>공급금액</th><th>공급단가</th><th>자료첨부</th></tr> </thead> <tbody> <tr> <td>1</td><td>신평상사</td><td>123-12-12321</td><td>콜비플렉스주 (8806449039916)</td><td>202534</td><td>1</td><td>586</td><td>12,475,596</td><td>18,186</td><td>공급신고맞음 첨부파일</td></tr> </tbody> </table>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1차 가중평균가			요양기관 확인결과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자료첨부	1	신평상사	123-12-12321	콜비플렉스주 (8806449039916)	202534	1	586	12,475,596	18,186	공급신고맞음 첨부파일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1차 가중평균가			요양기관 확인결과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자료첨부																														
1	신평상사	123-12-12321	콜비플렉스주 (8806449039916)	202534	1	586	12,475,596	18,186	공급신고맞음 첨부파일																										
공급신고 착오	▶ 증빙자료: 필요 없음 - 해당 분기 내의 공급단가가 요양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명세서의 구입단가와 다른 경우 =공급업체에서 공급신고를 잘못된 경우 공급내역 현추가 현삭제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순번</th><th rowspan="2">구입처</th><th rowspan="2">사업자 등록번호</th><th rowspan="2">약품명 (표준코드)</th><th rowspan="2">구입 분기</th><th rowspan="2">적용규격</th><th colspan="3">1차 가중평균가</th><th>요양기관 확인결과</th></tr> <tr> <th>공급수량</th><th>공급금액</th><th>공급단가</th><th>자료첨부</th></tr> </thead> <tbody> <tr> <td>1</td><td>신평상사</td><td>123-12-12345</td><td>콜비플렉스주 (8806205001826)</td><td>202514</td><td>10</td><td>50</td><td>1,184,500</td><td>2,369</td><td>공급신고착오 첨부파일</td></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40</td><td>956,000</td><td>2,390</td><td></td></tr> </tbody> </table>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1차 가중평균가			요양기관 확인결과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자료첨부	1	신평상사	123-12-12345	콜비플렉스주 (8806205001826)	202514	10	50	1,184,500	2,369	공급신고착오 첨부파일							40	956,000	2,390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1차 가중평균가			요양기관 확인결과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자료첨부																														
1	신평상사	123-12-12345	콜비플렉스주 (8806205001826)	202514	10	50	1,184,500	2,369	공급신고착오 첨부파일																										
						40	956,000	2,390																											
기타 (코드착오)	▶ 증빙자료: 해당 분기 내 실제 거래내역에 해당하는 거래 명세서 - 요양기관 청구착오(코드 착오)인 경우 공급내역 현추가 현삭제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순번</th><th rowspan="2">구입처</th><th rowspan="2">사업자 등록번호</th><th rowspan="2">약품명 (표준코드)</th><th rowspan="2">구입 분기</th><th rowspan="2">적용규격</th><th>공급수량</th><th>공급금액</th><th>공급단가</th><th>요양기관확인결과</th></tr> <tr> <th>수량</th><th>금액</th><th>단가</th><th>자료첨부</th></tr> </thead> <tbody> <tr> <td>1</td><td>신평약품(주)</td><td>120-86-07029</td><td>트라헵탈0.15%(트러하) (88067202925)</td><td>202524</td><td>200</td><td>3</td><td>34,800</td><td>58</td><td>기타(코드착오) 공급신고착오 기타(코드착오)</td></tr> </tbody> </table>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요양기관확인결과	수량	금액	단가	자료첨부	1	신평약품(주)	120-86-07029	트라헵탈0.15%(트러하) (88067202925)	202524	200	3	34,800	58	기타(코드착오) 공급신고착오 기타(코드착오)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요양기관확인결과																				
		수량	금액	단가	자료첨부																														
1	신평약품(주)	120-86-07029	트라헵탈0.15%(트러하) (88067202925)	202524	200	3	34,800	58	기타(코드착오) 공급신고착오 기타(코드착오)																										
단가변경	▶ 증빙자료: 필요 없음, 단가변경 하단 접수메시지 기재 혹은 전화 문의 - 재고 소진 이후에 거래한 단가로 변경 신청 ▶ 증빙자료: 단가변경 확인서 및 재고 확인 가능 서류 등 - 단가변경 확인 서식(요양기관장 직인 必) - 재고 확인 가능 서류(재고수불대장 혹은 재고관리 프로그램 캡처본 등) - 거래명세서 - 반품의 경우에는 반품명세서 단가변경 이전 단가변경제출건 적용 단가변경신고내역조회 현추가 현삭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th>단가변경구분</th><th>구입처</th><th>사업자번호</th><th>약품명</th><th>구입일자</th><th>적용규격</th><th>구입수량</th><th>구입금액</th><th>구입단가</th><th>파일첨부</th></tr> </thead> <tbody> <tr> <td>1</td><td>단가변경</td><td>신평제약</td><td>123-12-12345</td><td>가소물액(시메치론)(군납용:시메치론현탁)</td><td></td><td>1</td><td>10</td><td>100,000</td><td>10,000</td><td>첨부파일</td></tr> </tbody> </table> 1. 구입단가 = 구입금액/(구입수량*적용규격)으로 계산되어집니다. 2. 최초구입의약품은 단가변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순번	단가변경구분	구입처	사업자번호	약품명	구입일자	적용규격	구입수량	구입금액	구입단가	파일첨부	1	단가변경	신평제약	123-12-12345	가소물액(시메치론)(군납용:시메치론현탁)		1	10	100,000	10,000	첨부파일												
순번	단가변경구분	구입처	사업자번호	약품명	구입일자	적용규격	구입수량	구입금액	구입단가	파일첨부																									
1	단가변경	신평제약	123-12-12345	가소물액(시메치론)(군납용:시메치론현탁)		1	10	100,000	10,000	첨부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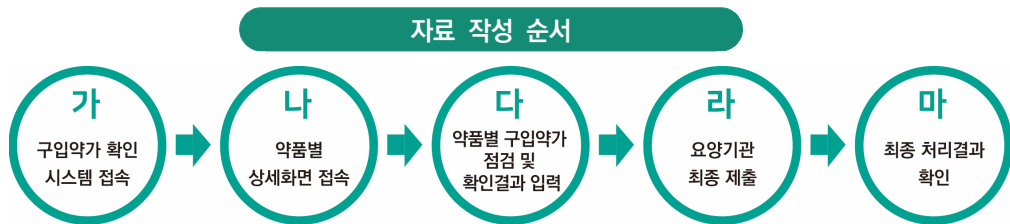
6) 추가확인

- 심사평가원 담당자가 구입약가 검증 및 확정단계에서 추가 확인하는 경우
 - 요양기관이 「공급신고 착오」로 확인하고 공급업체가 「공급신고 맞음」으로 재확인하는 등, 확인 내용이 계속 상반될 때 요청
- ※추가확인 요청 후 3일 이내에 확인 및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7) 구입약가 확정

- 요양기관은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정된 구입약가 조회
- ※웹메일 및 SMS 통보(관할 요양기관 해당 본원·본부별 통보)

2.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 구입약가 확인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조회되지 않음

가.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접속방법

◆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접속 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접속

구입약가 메인 화면

HIRA 요양기관업무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검색

업무안내 | 의료기준관리 | **진료비청구** | 정산관리 | 모니터링 | 자동차보함 | 정보화지원

진료비청구
Diagnosis Amount Demand

- 전행과정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환자평가표접수
- 청구오류
- 조선환 청구 및 조회
- 의약품관리**
- 의약품접고조회
- OpenAPI 신청및조회
- 코로나치료제 보유주장 업제정
- 보 다운로드
- 구입약가**
 - 구입약가 업무안내
 - 사건가중평균가
 - 불합치의약품안내
 - 구입약가 확인**
 - 구입약가산정관리

구입약가 확인

홈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마이메뉴 추가 | 출력 | چاپ | 정검요청 | 도움말

> 연도 2026 > 차수 2 > Q 조회

구입약가 확인현황

메뉴얼 다운로드

연도	차수	대상종목수	전행구분	1차통보일	2차통보일	접수대검일	추가통보일	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전료년월
No Data.											

구입약가 확인목록

✓ 조회 후 시식받기를 이용해주세요.

단가변경확인서식 | 단가변경업로드서식받기

단가변경업로드 | 단가변경산고내역다운로드 | 역설지장(전체)

약품코드 > > 전행구분 - 전체 - > Q 조회

◆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메인화면 용어설명(1)

◆ ‘구입약가 확인현황’ 메뉴

구분	내 용
연도 및 차수	연도별 구입약가 확인차수가 최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과거 불일치 내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대상품목수	청구단가 대비 공급 가중평균가 불일치 대상 품목수로 품목수를 클릭하면 구입약가 확인목록이 조회됨
진행구분	구입약가 확인 및 점검 과정을 ‘작성 중, 작성완료, 처리 중, 처리완료’로 구분하여 나타냄 (작성 중) 요양기관이 확인 중인 경우 (작성완료)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제출 완료한 경우 (처리 중) 요양기관 접수마감 후 심사평가원에서 확인 중인 경우 (처리완료) 심사평가원에서 구입약가를 최종 확정된 경우
1차 통보일	요양기관 1차 통보일이며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최종제출 누락 시 2차 통보함.
2차 통보일	1차 통보기간 내 미제출 기관에 한하여 2차 통보를 실시하며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접수마감일	2차 통보 처리기한 마감시점에서 접수마감하며 요양기관은 더 이상 자료입력 불가능
추가통보일	접수마감 후 심사평가원 확인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별도 추가통보 요양기관은 추가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료 확인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처리기한	통보 종류(1차, 2차 및 추가확인)에 따라 처리기한 자동 생성
진료년월	해당 차수의 청구명세서 진료년월

◆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메인화면 용어설명(2)

◆ ‘구입약가 확인목록’ 메뉴

구분	내 용
단가변경 확인서	단가변경 신청 시 단가변경 확인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한 뒤, 기관장 확인문서(기관장 직인), 거래명세서와 함께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제출
최초구입 확인서	최초 구입한 의약품의 경우 최초구입확인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기관장 확인문서(기관장 직인)와 같이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제출
단가변경업로드 서식받기 및 단가변경업로드	단가변경 또는 최초구입 의약품이 많아 건별로 입력하기 곤란한 경우 단가변경 업로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내용 입력 작성 완료 후 단가변경 업로드를 클릭하면 의약품별 단가변경 입력란에 작성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됨
단가변경 신고내역 다운로드	요양기관이 ‘현행 차수’에서 단가변경으로 확인한 의약품목록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엑셀저장(전체)	의약품별 구입약가 확인결과, 청구현황(요양개시일자, 청구단가, 공급분기 등), 공급내역(구입처, 구입분기, 구입수량 등)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약품코드	확인목록에 있는 의약품 약품코드별로 조회
진행구분	의약품별 구입약가 확인 및 점검 과정을 ‘작성 중, 작성완료, 추가요청, 작성완료’로 구분하여 보여줌 추가요청은 심사평가원 담당자가 구입약가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에 한하여 요청
약품명	약품명을 클릭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상세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최종제출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입력 완료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심사평가원으로 입력한 자료가 자동전송되며 구입약가 확인현황의 진행구분이 ‘제출완료’로 변경
(처리완료 후) 처리결과	구입약가 점검 완료 후 심사평가원 담당자가 최종 처리한 결과(공급신고착오/단가변경/요양기관착오/미확인/기타(코드착오))를 보여줌
(처리완료 후) 일치여부	구입약가 점검 완료 후 최종 산출된 가중평균가와 청구단가의 일치 여부(일치/불일치)를 보여줌

- ◆ 청구현황: 요양개시일자, 청구단가, 공급분기, 1차 가중평균가 등
- ◆ 공급내역
 - 공급업체의 보고내역(구입처, 약품명, 공급분기, 수량, 금액, 단가 등)
- ◆ 공급업체 신고자료(공급내역의 공급수량 클릭 시)
 - 구입처별 일자, 수량, 적용규격, 금액, 단가 등 상세조회 가능
- ◆ 단가변경: 단가변경 또는 최초구입 의약품에 대한 정보 입력
- ◆ 접수메시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참고사항 등 필요한 정보 입력

구입약가 정보안내 × **구입약가 확인** ×

주 > 진료과 > 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의약품명(최소구입) 의약품의 공급분기는 (단가별공급)으로 표시됩니다.

※ **영구변환** **이력보기**

의약품코드 의약품명 권리년월	의약품개시일자 연비아질(남성특효소염산염), (50mg/1정) 2002-08 ~ 2002-10	변환 1	요양계치당량자 298	변환단가 200204	공급분기 8	1차기준환가 2	2차기준환가	최종기준환가

○ **공급내역** **인수거** **일시적**

순번	구입처	시달일자 등록번호	의약품명 (표준분도)	구입 분기	1차 기준환가			2차 기준환가			요양계치 확인결과	공급업체 확인결과	처리결과	
					적용규격	수량수량	수량금액	수량단가	수량수량	수량금액				수량단가
1	주식회사 삼정약품	120-86-07029	레비아질(남성특효소염산염) (500μg/4000000)	100		5	4,005	8				공급신고착오	공급신고착오	공급신고착오
						5	149,000	298				항상부합	항상부합	

- 기준환가(단가) = 공급금액/(공급수량×적용규격)으로 계산해 냈습니다.
- 단가별공급 약품들은 아래 단가별공급에 등록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요양계치 확인결과가 기타는 삭제할 경우, 코드입력 적오 원인 규명하면 연결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공급업체 신고자료**

순번	구입처(시달일자등록번호)	의약품명	구입일자	구입수량	적용규격	구입금액	구입단가

○ **단가변경** ☐ **단가변경대상제출** 적용 **단가변경신고내역조회** **인수거** **일시적**

순번	단가변경분부	구입처	시달일자번호	의약품명	구입일자	적용규격	구입수량	구입금액	구입단가	변경신청가	변경율	비고설명부

1. 구입단가 = 구입금액/(구입수량×적용규격)으로 계산해 냈습니다.
2. 최소구입 약품들은 단가별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송해설지

가장 목록 이전 다음

◆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의약품 상세화면 용어설명

◆ 청구현황

구분	내 용
요양개시일자	청구·공급 불일치 의약품이 처음 발생된 명세서의 요양개시일자
청구단가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청구한 단가
공급분기	진료월에 따른 공급분기로 해당 분기 내역이 없으면 이전 공급분기 및 가중평균가를 보여줌
1차 가중평균가	공급업체가 보고한 내역을 근거로 산출한 가중평균가 (분기 총 공급금액을 총 공급수량으로 나눈 값)
2차 가중평균가	요양기관이 공급신고 착오 또는 미확인한 경우 공급업체가 재확인한 내역을 근거로 산출한 가중평균가
3차 가중평균가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확인내역과 공급 보고내역을 근거로 최종 확정한 가중평균가(확정단가)

◆ 공급내역 및 단가변경

구분	내 용
구입처 및 사업자 등록번호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한 구입처 및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사업자등록번호는 총 10자리 숫자로 구성
표준코드(13자리)	의약품 표준코드는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숫자로 최소 포장단위에 부여
적용규격	의약품별 포장단위
행추가 및 행삭제	공급내역에서 구입처 또는 적용규격 착오 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입력 단가변경(최초구입) 의약품인 경우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입력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행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 행을 추가하여 입력하는 경우는 구입처는 직접 기입, 약품명은 선택할 수 있도록 팝업창 생성
단가변경 신고내역 조회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품에 대해 '이전 차수'에서 단가 변경한 의약품 목록 및 상세내역을 조회

다. 의약품별 구입약가 점검 및 확인 결과 입력

◆ 공급내역(분기 가중평균가)에 대한 요양기관 확인기준 및 증빙자료

- 기타(코드착오)
 - ▶ 확인기준: 요양기관 청구착오(코드 착오)인 경우
 - ▶ 증빙자료: 필요 없음
- 공급신고 맞춤
 - ▶ 확인기준: 공급업체 보고내역(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등)이 모두 맞는 경우
 - ▶ 증빙자료: 필요 없음
- 공급신고 착오
 - ▶ 확인기준: 공급업체,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등 공급업체 보고내역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 ▶ 증빙자료: 해당 공급분기 내 실제 거래내역에 해당하는 거래 명세서
- 단가변경
 - ▶ 확인기준: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량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가격으로 새로구입 또는 처음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 ▶ 증빙자료: 단가변경(최초구입)확인서 또는 재고 확인 가능 서류 등
 - 단가변경(최초구입)확인서(요양기관장 직인 必)
 - 재고 확인 가능 서류(재고수불대장 혹은 재고관리 프로그램 캡처본 등)
 - 반품명세서 및 거래명세서

(1) 약제 코드착오 여부 확인

- ▶ 코드착오 아닌 경우 다음 단계(2)로 이동
- ▶ 코드착오인 경우, 요양기관 확인결과-기타(코드착오) 선택 후
라.최종제출로 이동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착오 청구한 경우, 요양기관 확인 결과 「기타(코드착오)」로 처리 후 수량, 금액 0 입력 (전액환수 예정)

공급내역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요양기관확인결과
						수량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자료첨부
1	심평약품(주)	120-86-07029	트라왕정0.125밀리그램(트리아이) (8806572029225)	202524	200	3	34,800	58	기타(코드착오)
									공급신고맞음
									공급신고착오
									기타(코드착오)

(2) 1차 가중평균가(공급단가) vs. 요양기관의 거래명세서(구입단가) 비교

- ▶ 공급신고 맞는 경우, 요양기관 확인결과-공급신고 맞음 선택 후
라.최종제출로 이동
- ▶ 공급신고가 잘못된 경우, 요양기관 확인결과-공급신고 착오 선택하여
수정 후, **라.최종제출**로 이동

- 요양기관의 확인결과가 「공급신고 착오」인 경우, 공급업체 2차 확인 대상이
되며 요양기관 증빙자료 비교하여 최종 처리
- 「공급신고 착오」인 경우, **증빙자료 필수**

(2-1) 공급수량 및 공급금액 착오

○ 공급신고 착오 선택 후 수정수량, 수정금액에 실제 거래내역 입력

공급내역

행추가

행삭제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1차 가중평균가			요양기관 확인결과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자료첨부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1	신평상사	123-12-12345	페링가니트0.1%주사(니트로글 (8806205001826))	202514	10	50	1,184,500	2,369	공급신고착오
						40	956,000	2,390	첨부파일

(2-2) 구입처 및 적용규격 착오

※ 구입처 및 적용규격(표준코드)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기존 공급내역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행추가'하여 새로 입력

○ 기존 공급내역란의 수정수량, 수정금액을 모두 "0"으로 입력하고 요양기관 확인 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처리

○ 행 추가하여 구입처, 적용규격 등 정확한 공급내역을 입력하고 요양기관 확인 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처리

공급내역						행추가	행삭제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1차 가중평균가			요양기관 확인결과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자료첨부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1	(주)신평상	231-23-23101	페링가니트0.1%주사(니트로글 (8806205001826))	202534	10	50	1,184,500	2,369	공급신고착오
						0	0	0	첨부파일
2	(주)신평상	231-23-23101	페링가니트0.1%주사(니트로글 (8806205001819))	202534	1	500	1,184,500	2,369	공급신고착오
									첨부파일

(2-3) 구입분기 착오

※ 분기별 공급내역이 있음에도 공급업체가 보고를 하지 않아 종전 분기 가중 평균가가 생성된 경우, 기존 공급내역에서 분기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행추가' 하여 새로 입력

○ 기존 공급내역란은 해당 분기의 구입내역을 확인하여 공급신고 내역이 맞으면 「공급신고 맞음», 공급신고 내역이 틀리면 「공급신고 착오」를 선택한 후 수정 수량, 금액란에 실제 구입내역을 입력

○ 행 추가하여 구입처, 구입수량 등 해당 분기의 구입내역을 모두 합하여 정확히 입력하고 요양기관 확인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처리

홈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① 청구현황

이력보기

▼ 단가변경(최초구입) 의약품의 공급분기는 D(단가변경)으로 표시됩니다.

약품코드	순번	요양개시일자	청구단가	공급분기	1차 가중평균가	2차 가중평균가	3차 가중평균가
620500181	1	20251010	2,821	202514	2,369		
약품명	폐렴가나트0.1%주사(니트로글리세린). (10m)						
전료년월	2025-08~2025-10						

② 공급내역

행추가

행삭제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1차 가중평균가			요양기관 확인결과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자료첨부
1	(주)삼평합	987-87-98765	폐렴가나트0.1%주사(니트로글 (8806205001826))	202514	10	50	1,184,500	2,369	공급신고맞음 ▼
									첨부파일
2	(주)삼평합	987-87-98765	폐렴가나트0.1%주사(니트로글 (8806205001826))	202524	10	50	1,410,500	2,821	공급신고착오 ▼
									첨부파일

(3) 재고소진 증빙 후 단가변경 or 처음 구입한 약제

- ▶ 재고소진 후 단가변경 시 (3-1)부터 참고하여 작성 후, **라.최종제출**로 이동
- ▶ 해당 사항 없으면 **라.최종제출**로 이동

◆ 단가변경 및 최초구입에 대한 요양기관 확인기준

- 단가변경: 요양기관이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량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최초구입: 요양기관이 처음 구입하여 사용한 의약품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단가변경 및 최초구입 모두 거래명세서, 재고량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인정 시 최종 「단가변경」으로 처리
- 증빙자료: 단가변경 확인서 또는 재고 확인 가능 서류 등
 - 단가변경 확인 서식(요양기관장 직인 必)
 - 재고 확인 가능 서류(재고수불대장 혹은 재고관리 프로그램 캡처본 등)
 - 반품명세서 및 거래명세서

※ 단가변경(최초구입)은 분기 가중평균가가 생성되기 전까지 새로 구입한 단가를 즉시 적용하므로 요양기관이 구입내역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의약품을 품목별로 입력하거나 일괄 업로드 가능

(3-1) 단가변경/최초구입 의약품 품목별 입력

- 단가변경이 있는 경우 행 추가하여 구입처, 구입일자, 수량, 금액 입력 및 재고량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접수메시지를 통해 의약품 구입 및 청구내역에 대한 특이사항 기재

◎ 단가변경 ☐ 이전 단가변경제출건 적용 단가변경신고내역조회 할추가 행사제

순번	단가변경구분	구입처	사업자번호	약품명	구입일자	적용규격	구입수량	구입금액	구입단가	변경상한가	변경일	확인서류
1	단가변경	신흥제약	123-12-12345	씨제이반코마이신염산염주1그람(수용액)	2025-10-10	1	10	100,000	10,000			첨부파일

1. 구입단가 = 구입금액/(구입수량*적용규격)으로 계산되어집니다.
2. 최초구입약제는 단가변경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접수메시지

- 이전에 단가변경 한 의약품으로 단가변경 이후 변경내역이 없는 경우, '이전 단가변경 제출건 적용'을 클릭하여 해당 의약품을 확인 후 적용

(3-2) 단가변경/최초구입 일괄 업로드 방식으로 입력(10건 이상)

- 단가변경 의약품이 많아 건별로 입력하기가 어려운 경우 구입약가 확인 메인 메뉴에서 단가변경 업로더서식 다운로드
- 단가변경에 해당하는 의약품별 구입처, 사업자번호, 구입일자 등 구입내역 입력 후 저장
- 저장된 파일을 단가변경 업로드 버튼을 통해 적용

☞ 홈 > 진료비환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공제율기 추가 출력 합계 항목요청 도움말

연도 2026 차수 2 Q 조회

① 구입약가 확인현황

메뉴얼 다운로드

	연도	차수	대상품목수	전행구분	1차통보일	2차통보일	접수대검일	추가통보일	담당자	연락처	제각기한	진료연월
☐	2026	2	17	처리중	20260408		20260425				20260425	2025-02 ~ 2025-04

② 구입약가 확인목록

단가변경확인서식 단가변경업로드(서식별기)

✓ 조회 후 서식별기름 이용해주세요. 단가변경업로드 단가변경신고내역다운로드 엑셀저장(간접)

약품코드	약품명	단가변경구분	구입처	사업자번호	구입일자	적용 유/없	구입금액	구입단가
645400200	레비마틴(납트록소닐산염) (50mg/1정)	1	(주) xx제약	1234567890	20180101	1	300,000	[구입단가 = 구입금액/(구입수량*적용규격)]
602603021	네오분주(마이크로그렘(칼시트리올) (1ug/1ml)	1: 단가변경			반드시 1p처리			
607202920	트리알정(0.125밀리그램(트리아올람) (0.125mg/1정)				순차만 작성			
					순차만 작성			
					(...) 식재			
					(...) 식재			

※ 단가변경 의약품 10건 이상인 경우 사용

(3-3) 단가변경/최초구입 증빙자료 제출방법

- 구입약가 확인 메인화면의 단가변경확인서식을 클릭하여 단가변경확인서 또는 최초구입 확인서 다운로드
- 단가변경 또는 최초구입 확인서식에 맞추어 내용을 작성 후 저장
- 단가변경 또는 최초구입이 발생한 최초 의약품에 단가변경 확인서 또는 최초 구입 확인서와 기관장 확인문서(기관장 직인) 파일을 첨부하고 필요시 접수 메시지란에 내용 입력

단가변경 확인서

최초구입 확인서

단가변경업로드서식받기

단가변경업로드서식받기

단가변경신고내역다운로드

엑셀저장(전체)

① 구입약가 확인목록

✓ 조회 후 서식받기를 이용해주세요.

단가변경업로드

단가변경신고내역다운로드

엑셀저장(전체)

약품코드

진행구분

- 전체 -

Q 조회

(별첨5)

단가변경 확인서 (예시)														
○ 확인자(소속): 요양기관 확인자 이름(소속) ○ 확인일자: (예시) 2023.02.20.														
연 번	약품코드	품명	용량 단위	기존 재고			단가변경							비고
				기존 재고량	재고 소진일	반품일	거래계약일자	계약최초 입고일 (거래명세서상 구입 일자)	구입수량	구입금액	구입일자	요양기관일자 (최초 사용일 자)	구입처	
1	642202200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	500	T	이전 입고수량	기존 재고량 소진한 일자	반품한 날	거래계약일=입고일인 경우 동일하게 입력	증빙용 명세서와 일치해야 함					

※ 참고사항

1. 동 서식은 기관장 확인문서에 '별첨' 서식으로 활용하고 대표약제에 첨부(문서는 요양기관 자율 작성)
2. 동 서식은 요양기관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하나, 단가변경 약제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요양기관이 작성·제출한 내용만으로 단가변경 약제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별도 요청 예정

여백에 기관명, 기관장 이름 포함 직인 필요

요양기관 의약품 청구가이드 | 33

라. 요양기관 최종 제출

- 불일치 의약품에 대하여 구입약가 확인 및 점검이 끝난 경우 최종 제출
 - 구입약가 확인현황에서 확인이 끝난 차수 선택 후 하단의 「최종 제출」버튼을 통해 최종 제출 완료
 - 요양기관 정보 입력(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 최종 제출을 완료하면 진행구분이 '작성중'에서 '제출완료'로 변경되며 요양기관은 내용 수정 불가
 - 단, 접수마감일 이전에 수정내역이 발생한 경우 심사평가원에 접수 취소 요청을 하면 접수취소 가능

홈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① **현구현황** 이력보기 단가변경(최소구입) 약제의 공급분기는 D(단가변경)으로 표시됩니다.

약가코드	순번	요약제시일지	현구단가	공급분기	1차 가중평균가	2차 가중평균가	3차 가중평균가
652000271	1	아데노코주사(아데노신)_(6mg/2mL)	5,800		5,421		

건료년월

② **공급내역** 항추가 항삭제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표준코드)	구입분기	적용규격	1차 가중평균가	2차 가중평균가	3차 가중평균가	요양기관 확인결과
1	심평심사	123-12-12345	아데노코주사(아데노신) (8805520002720)		6	10	325,260	5,421	자료첨부

- 가중평균가(단가) = 공급금액/(공급수량*환산규격) 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 단가변경약제는 아래 단가변경내역 입력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요양기관 확인결과와 '기타'는 삭제품 형구, 코드입력 착오 등인 경우에만 선택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③ **공급업체 신고자료**

순번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약품명	구입일자	구입수량	적용규격	구입금액	구입단가
1	심평심사(1231212345)	아데노코주사(아데노신)		10	6	325,260	5,421

접수메세지

1 저장 2 삭제 이전 다음

홈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① **구입약가 확인현황** 대대매뉴 추가 출력 전반 현경자료 도움말

연도 차수 대상품목수 잔액구분 1차동보일 2차동보일 접수대금일 건료년월

연도	2	5	처리중				
----	---	---	-----	--	--	--	--

② **구입약가 확인목적** 단가변경확인서식 단가변경업로드서식받기 단가변경업로드 단가변경신고내역다운로드 엑셀저장(현재)

약품코드 진행구분 - 전체 -

③ **담당자정보보입**

순번	약품코드	약품명	잔액구분
1	64250367		처리중
2	642506101		처리중
3	642506111		처리중

④ **담당자정보보입**

담당자: 0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0

최종제출

마. 의약품별 최종 처리결과

(1) 처리유형

유형	내 용
요양기관 착오	업체별 공급보고 내역이 모두 맞는 경우
공급신고 착오	업체별 공급보고 내역 중 한 건 이상 공급보고 착오 건이 발생한 경우
단가변경	재고량이 없는 의약품을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 - 단가변경 인정, 착오, 불인정으로 처리(최초구입도 단가변경으로 처리)
미확인	요양기관과 공급업체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의약품별 처리결과 확인

- 요양기관은 구입약가 확인목록의 처리결과를 통하여 의약품별 처리결과 확인
- 일치 여부는 청구단가와 확정단가를 비교한 결과로 동일한 경우는 일치, 상이한 경우는 불일치로 생성

홈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출거찾기 추가 출력 잠금 정검요청 도움말

> 연도 > 차수 > 조회

○ 구입약가 확인현황

메뉴얼 다운로드

연도	차수	대상품목수	전행구분	1차통보일	2차통보일	접수대금일	추가통보일	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전료년월

○ 구입약가 확인목록

단가변경확인서식 단가변경업로드서식발기

✓ 조회 후 서식발기를 이용해주세요.

단가변경업로드 단가변경신고내역다운로드 엑셀저장(전체)

약품코드 > 처리결과 > 전체 > 일치여부 > 전체 > 조회

총 : 6건

순번	약품코드	약품명	처리결과	일치여부
1	641801281	목시를시럽 156.25mg/5ml(아목시실린수화물·회석플라보란산합물)...(50mL)	단가변경	일치
2	642101591	유한세파라클렌조시럽(수술용·유클러렌조시럽)...(3.75g/150mL)	공급신고착오	불일치
3	643500804	엑시부펜시럽(엑시부프로펜)...(6g/500mL)	공급신고착오	일치
4	650100021	가소를액(시메치콘)(군납용·시메치콘원탁막500밀리리터(SimethiconeOralSuspension500ml)...(0.2g/10mL)	요양기관착오	불일치
5	653600931	자딘텐시럽(케토티펜푸마르산염)...(27.6mg/100mL)	단가변경	일치
6	654100052	씨알액(레보세티라진염산염)...(0.1g/200mL)	요양기관착오	불일치

(3) 유형별 상세처리내역

(3-1) 요양기관 착오

- 업체별 공급내역에 대해 요양기관 확인 결과, 모두 「공급신고 맞음」처리 권으로 최종 「요양기관 착오」로 처리
- 공급내역보고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최종 구입약가 확정

☞ 홈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① 청구현황

이력보기

✓ 단가변경의약품의 공급분가는 단가변경(적용일자)로 표시됩니다.

✓ 확정단가가 마스터단가(상한가)보다 높은경우 마스터단가로 반영되어 초과액비율으로 표시됩니다.

급여분가 추가 총액 합입 평균요율 도용율

약품코드	641801281	순번	1
약품명	목시를시럽156.25mg/5ml(아목시실린수화물)		
진료년월	2025-08~2025-10		

요양계시일자	평균단가	공급분가	1차 가중평균가	2차 가중평균가	3차 가중평균가	확정단가	첨가지 대부
20251010	55	202524	51		51	51	불입치

② 공급내역(분기)

순번	구입처 등록번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가	적용규격	1차가중평균가			2차가중평균가			최종 수량	최종금액	최종단가	요양기관 확인결과	공급업체 확인결과	처리결과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1	삼영 상사	123-12- 12345	목시를시럽156.25mg/5ml(아목 (88064180128157)	22534	50	1,370	3,493,500	51			1,370	3,493,500	51	자료첨부	자료첨부	공급신고맞음
														첨부파일	첨부파일	

③ 구입약가 확인목록

✓ 조회 후 서식받기를 이용해주세요.

단가변경확인서식

단가변경경로도서식받기

단가변경경로도

단가변경신고내역다음로드

역설재장(전체)

약품코드 > 처리결과 - 전체 - > 일치대부 - 전체 - Q 조회

총 : 6건

순번	약품코드	약품명	처리결과	첨가대부
1	641801281	목시를시럽156.25mg/5ml(아목시실린수화물 희석물라벨만산합물).(50mL)	요양기관착오	불입치
2	642101591	유한제파롤라겐조시럽(수출용-유한제파롤라겐조시럽).(3.75g/150mL)	공급신고착오	불입치
3	643500804	목시부펜시럽(목시부프로펜).(6g/500mL)	공급신고착오	일치
4	650100021	가소물릭(시메치콘[교합물]-시메치콘현탁액500알라티(SimethiconeOralSuspension500mL).(0.2g/10mL)	요양기관착오	불입치
5	653600931	가디텐시럽(게토티펜부마르산염).(27.6mg/100mL)	단가변경	일치
6	654100052	세달릭(레보세티라민염산염).(0.1g/200mL)	요양기관착오	불입치

(3-2) 공급신고 착오

- 요양기관 청구단가가 맞고 공급보고 내역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최종 「공급신고 착오」로 처리
- 증빙자료 확인 후 최종 구입약가 확정

홈 > 진료비 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공급내역 보기

단가변경의약품의 공급분기는 단가변경(적용일자)로 표시됩니다.
확정단가가 마스터단가(상한가)보다 높은 경우 마스터단가로 반영되어 소록색바탕으로 표시됩니다.

첨가하기

삭제

잠금

잠금요청

도움말

① 청구현황

약품코드641601281순번1

약품명목시럽시럽156.25mg/5mL(아목시실린수화물)

전료년월2025-08~2025-10

요양기관명	청구단가	공급분기	1차 가중평균가	2차 가중평균가	3차 가중평균가	확정단가	불입치 여부
20251010	55	202524	51	55	55	55	일치

② 공급내역(분기)

순번	구입처 등록번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1차가중평균가			2차가중평균가			최종 수량	최종금액	최종단가	요양기관 확인결과	공급업체 확인결과		처리결과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자료첨부	자료첨부	
1	심평원 789-89-78989	목시를시럽156.25mg/5mL(아목 (88064160128177))	202524	50	1,370	3,493,500	51	1,370	3,767,500	55	1,370	3,767,500	55		공급신고착오	공급신고착오	공급신고착오
					1,370	3,767,500	55								첨부파일	첨부파일	

③ 구입약가 확인목록

단가변경확인서식

단가변경경로도서식받기

조회 후 서식받기를 이용하실주세요.

단가변경경로도

단가변경신고내역다운로드

역설자장(전체)

약품코드

처리결과

일치여부

조회

출 : 6건

순번	약품코드	약품명	처리결과	일치여부
1	641601281	목시를시럽156.25mg/5mL(아목시실린수화물 희석물라벨관산합물)(50mL)	공급신고착오	일치
2	642101591	유한제파클라겐조시럽(수술용·유혈라겐조시럽)(3.75g/150mL)	공급신고착오	불일치
3	643500804	엑시부텐 시럽(엑시부프로펜)(5g/500mL)	공급신고착오	일치
4	650100021	가소콜릭(시메치콘사금납용·시메치콘현탁액500밀리리터(SimethiconeOralSuspension500mL))(0.2g/10mL)	요양기관착오	불일치
5	653600931	자디텐 시럽(케토티펜투마르산염)(27.6mg/100mL)	단가변경	일치
6	654100052	씨칼릭(레보세티라진염산염)(0.1g/200mL)	요양기관착오	불일치

요양기관 의약품 청구가이드 37

- 증빙자료 확인 결과, 단가변경으로 인정 된 경우
 - 구입일자, 구입수량 등에 착오가 발생하여 「공급신고 착오」로 처리된 경우도 최종 「단가변경」으로 처리
 - 단가변경 불인정의 경우는 최종 요양기관 착오 또는 공급신고 착오로 처리
- 단가변경일 이후 요양개시일부터 단가변경이 적용됨
- 요양개시일자가 단가변경일 이전인 경우 불일치여부는 “불일치”로 표시됨

3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4) 미확인

- 요양기관과 공급업체 모두 구입약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최종「미확인」으로 처리
- 공급 가중평균가(1차) 기준으로 최종 구입약가 확정

주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입계할거 추가

선택

잠입

정검요청

도움말

① 청구현황

이력보기

약종코드641601281순번1

약종명목시콜시럽156.25mg/5mL(아목시실린수화물)

건료년월2025-09-2025-10

단가변경의약품의 공급분가는 단가변경(적용일자)로 표시됩니다.

확정단가가 마스터단가(상한가)보다 높을경우 마스터단가로 반영되어 초과액비율으로 표시됩니다.

요양계시열자	평균단가	공급분가	1차가중평균가	2차가중평균가	3차가중평균가	확정단가	분양치여부
20251010	55	202534	51		51	51	불일치

② 공급내역(분기)

순번	구입처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약종명(표준코드)	구입분기	적용규격	1차가중평균가			2차가중평균가			최종수량	최종금액	최종단가	요양기관확인결과	공급업체확인결과	처리결과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1	심평원	123-12-12345	목시콜시럽156.25mg/5mL(아목시실린수화물)(88064160128188)	202534	50	1,370	3,493,500	51				1,370	3,493,500	51	요양기관미확인	공급업체미확인	요양기관확인
															합부파일	합부파일	합부파일

③ 구입약가 확인목록

단가변경확인서식

단가변경업로드서식받기

조회 후 서식받기를 이용해주세요.

단가변경업로드

단가변경신고내역다운로드

역설자장(간체)

약종코드 > 처리결과 < 전체 < 일치여부 < 전체 <

Q 조회

총 : 6건

순번	약종코드	약종명	처리결과	일치여부
1	641601281	목시콜시럽156.25mg/5mL(아목시실린수화물·회색글리콜산염·50mL)	요양기관확인	불일치
2	642101591	유한제파롤라진조시럽(수용형:유한제파롤라진조시럽)(3.75g/150mL)	공급신고확인	불일치
3	643500804	목시부린시럽(목시부린수화물)(5g/500mL)	공급신고확인	일치
4	650100021	가소콜릭(시메치콘)수용액·500mL(시메치콘OralSuspension500mL)(0.2g/10mL)	요양기관확인	불일치
5	653600931	자디텐시럽(제토다린포마르산염)(27.5mg/100mL)	단가변경	일치

요양기관 의약품 청구가이드 39

바. 구입약가 최종 확정

(1) 구입약가 최종 확정 안내

- 요양기관 웹메일
 - 요양기관업무포털 안내 배너(링크) 제공
 -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팝업 통보
 - 문자서비스 등록기관은 SMS 통보 병행
- ※ 의약품별 세부 확정내역은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확인

요양기관 업무포털 안내 배너

The screenshot shows the HIRA portal for medical institutions.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업무안내' (Service Guide), '의료기준관리' (Medical Standard Management), '진료비 청구' (Billing), '정산관리' (Settlement Management), '모니터링' (Monitoring), '자동차보험' (Car Insurance), '정보화지원' (IT Support), and '검구소프트웨어 검사 인증' (Software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가치 있는 심사 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 (Valuable review and evaluation, together with the people's health) and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Below the banner, there are two sections for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 안내' (Medical institution purchase price confirmation notice). The left section is for 2026, and the right section is for 2025. Both sections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implementation of a new system for purchase price confirmation. The 2026 section mentions that the new system will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February 1, 2026, and that medical institutions should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The 2025 section mentions that the new system will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February 1, 2025, and that medical institutions should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The '공지사항' (Notice) section lists various notic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

(2) 구입약가 확인 및 확정 안내 SMS 신청

(2-1) 신청방법

-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 및 확정 안내를 위한 SMS 신청
 -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
 - 담당자 기본 정보 입력
 - 「구입약가 확인」그룹의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 및 확정안내 선택 후 등록

(2-2) 문자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구입약가 확인안내	00년 0분기 공급내역,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기간입니다.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 확인에 접속하시어 확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약가 확정안내	00년 0분기 공급내역, 요양기관 구입약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 확인에서 확정된 구입약가를 확인하십시오.

1. 구입약가 정산

가. 개념

- 구입약가 확인결과, 요양기관이 착오청구한 약품비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정산(환수)하는 업무

나. 대상

- 구입약가 확인결과, 청구단가와 최종 확정단가가 일치하지 않는 의약품
 - 요양기관 청구단가가 확정단가보다 높은 경우
 - 요양기관의 구입내역이 없는데 청구가 발생한 경우(약품코드 착오 청구) 등

※ 확정단가가 요양기관 청구단가보다 높은 경우는 정산되지 않으며 확정단가와 청구단가 차액분에 대하여 추가청구 가능함

다. 정산코드

- 구입약가 청구착오로 인한 단가조정이므로 “A코드(금액산정착오 조정코드)”로 정산됨

라. 시기 및 기간

- 구입약가 확정 통보 및 안내 후 실시하며 약 한달 정도 소요

※세부 일정 구입약가 정기확인 안내 공지 참고

마. 결과 통보

- EDI 통하여 정산심사결과 통보
 - 정산심사결정서: 요양기관 접수번호별 총 정산금액, 명세서별 정산금액
 -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 접수번호, 명일련, 약품코드별 정산금액

2.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정산심사 대상 확인

가. 확인 시기

○ 구입약가 확정 통보 및 안내에 따라 구입약가 최종 확정결과 확인

※ 구입약가 확정 통보 및 안내: 웹메일, SMS(신청기관), 요양기관 업무포털 배너 및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팝업

나. 확인 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으로 접속하여 구입약가 확인 차수 및 의약품별 처리결과, 청구단가, 확정단가 등 확인
 -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확정단가가 ‘불일치’인 의약품이 정산심사 대상에 해당

○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접속 후 처리결과 및 일치여부 확인

순번	약품코드	약품명	처리결과	일치여부
1	641801880	시클로헥실 250mg/리그립(제1과제)수용액 8EAH(CLO)	단가변경	일치
2	641802479	티로피람(정제)티로피람(정제)	단가변경	일치
3	642000600	동아수소막스캡슐 100mg/리그립(제1과제)수용액	단가변경	불일치
4	642008479	코아우로탄정 300/12.5mg/리그립	공급상조약도	일치
5	643001100	사마를-비타민정 100mg/리그립(수용액)티나소로탄정 100mg/리그립	단가변경	일치

3.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정산심사 결과 확인

- 요양기관업무포털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이의신청 (재심사/환수/정산)등 정산 결과로 접속
- 보험자별, 정산년월일, 정산차수별, 명세서 건별 정산내역 확인

의의신청(재심사/환수/정산)등 정산 결과(전산통보기관용) x

홈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이의신청(재심사/환수/정산)등 정산 결과(전산통보기관용)

금계재가 추가

송액

환입

정금요령

도움말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보훈위탁

☒ EDI

> 작업구분

정산 심사 내역서

> 정산구분

건별

> 접수번호

> 자원

분원

> 정산년월

2023-02

> 정산차수

91 ~ 94

> 정산심사코드

건별

> 명일련

Q 조회

> 이의신청 : 정산통보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접수 가능

> 재심사조청청구 : 정산통보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접수 가능

④ 정산심사목록

총 : 2984건 | 엑셀저장

순번	자원	정산구분	정산차수	정산통보일자	접수번호	청달련	정산연번	정산심사코드	정달련	명일련	전달연태	사업자거호	증번호	수전자	가입자	환수/환급상행거호	요양개시일자	소계 I	소계 II	정산심사 가감액		
1	분원	이의신청	20230294	2023-02-24	3	2021033211	D1				1						환급	O161	2021-11-08	1,372,331	1,468,430	583,340
2	분원	이의신청	20230294	2023-02-24	2	2021035955	D1				1						환급	C310	2021-11-13	6,837,811	5,974,050	29,810
3	분원	이의신청	20230294	2023-02-24	2	2021035956	D3				1						환급	C000	2021-11-30	1,537,564	1,603,660	147,420
4	분원	이의신청	20230294	2023-02-24	1	2022001128	05				2						환급	M8580	2021-12-08	264,124	2,300	96,280
5	분원	이의신청	20230294	2023-02-24	1	2022033282	05				1						환급	C029	2021-12-12	252,090	259,320	156,620
6	분원	이의신청	20230294	2023-02-24	1	2023000010	88				2						환급	S018	2021-12-31	130,522	41,560	14,100
7	분원	이의신청	20230294	2023-02-24	1	2023000010	88				2						환급	S018	2022-01-05	140,600	163,970	17,020
8	분원	이의신청	20230294	2023-02-24	1	2023000010	88				2						환급	S018	2022-01-11	68,863	40,650	14,110
9	분원	이의신청	20230294	2023-02-24	1	2023000010	88				2						환급	S018	2022-01-22	129,215	58,600	11,400
10	분원	이의신청	20230294	2023-02-24	1	2023000010	88				2						환급	S018	2022-01-23	144,812	272,800	15,490

4. 이의신청

가. 개념

-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로서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구입약가 정산심사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및 의료급여법 제30조(이의신청 등)

나. 대상

- 구입약가 조정분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을 대상으로 함
 - 요양기관이 구입약가 확인 시, 분기 가중평균가 및 공급내역을 착오 확인하였거나 단가변경(최초구입) 의약품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 해당

※ 이의신청 제외 대상: 추가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의신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다. 신청 방법

- 서면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웹 이의신청 가능함
 - 서면 청구 시, 해당 요양기관 관할 본원·**본부**(본원 의약품정보조사부, **본부** 고객지원부)로 접수

※ 관련 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정산심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

라. 결과 확인

- EDI를 통하여 요양기관에 이의신청결과 통보

마. 이의신청 첨부서류

- 해당 진료월에 적용된 청구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거래명세서(구입일자, 약품코드, 약품명, 금액 등 포함)
 - 의약품구입에 관한 서류(재고량 확인서 등 구입 및 재고현황 관련 서류)
 - 진료기록지
- 기타 구입약가 산정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요양기관이 구입약가 확인을 잘못하여 청구단가가 조정된 경우

- 요양기관의 청구단가가 맞는 경우로 구입약가 확인 시 요양기관 담당자가 분기 가중평균가 및 공급내역을 잘못 확인하여 조정된 사례임
 - 진료기록지 및 요양기관 청구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거래명세서 및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 등으로 분기 가중평균가 및 상세내역 첨부

(2) 단가변경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단가변경(최초구입) 의약품이나 요양기관이 단가변경 확인을 누락한 경우로 진료기록지 및 재고량 확인서, 의약품수불대장, 거래명세서 등 단가변경 의약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3)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변경일을 기재하지 않아 조정된 경우

- 장기투약으로 인해 가중평균가가 달라진 경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줄번호를 달리하여 변경일자란에 변경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나 기재누락으로 정산된 사례임
 - 투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등 증빙자료 첨부

바. 웹 이의신청방법

- 웹 이의신청은 서면 이의신청과 달리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의신청 대상을 선택하여 접수하는 방법
- (요양기관) 이의신청서 작성용이, 이의신청과 동시에 접수증 발송, 이의신청 진행과정 조회, 불필요한 행정 비용 감소 등의 장점이 있음
- (심평원) 이의신청에 대해 자동접수, 색인, 자료 확보, 반송 등 일괄 처리

(1) 웹 이의신청시스템 접속

- [요양기관업무포털](#)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이의신청/환수/정산](#)
으로 접속

통합검색		검색						
2	업무안내	의료기준관리	1 정산관리	모니터링	자동차보험	정보화지원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시험사업
- 재심/의의신청/환수/정산 - 안내 - 재심/의의신청/환수/정산 진행과정조회 - 재심사조청영구/환수/정산 - 의의신청/환수/정산		- 심판청구 - 안내 - 심판청구(new) - 심판청구 진행과정확인 - 심판청구 심사자료제출		- 응급의료비용 태지급 청구 - 안내 - 청구		- 권료배확인요청 - 안내 - 권료배확인요청 - 건급의료원배 확인		
3	심사자료제출							
- 의의신청(재심사/환수/정산)등 정산 결과(전산통보기관용) - 정산심사통보서조회(서면통보기관용)								

- 원청구 접수년월 또는 진료년월, 접수번호 입력 후 조회
 - 구입약가 확인에 따른 정산심사 의약품만 이의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청구 단계에서 전산자동 조정되는 의약품은 해당사항 없음
 - 정산부서 : (상급종합, 종합병원, 약국) 본원 의약품정보조사부
(병원, 의원) 본부 고객지원부

4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이의신청 대상 명세서 선택 및 접수

- [명세서내역] 해당 명세서 선택
- [명세서별 코드별 조정내역] 조회 및 선택하여 이의신청 추가
- [신청내역] 추가된 명세서 선택
- [사유] 클릭하여 이의신청 사유 입력 저장
- 이의신청 담당자 기본정보 입력 및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이의신청 최종제출 버튼 클릭 시 완료

[명01,명02란 단위\(조정\)](#) |
 [명02,코드별\(조정\)](#) |
 [명03,명04란 단위\(조정\)](#) |
 [명04,접수번호 단위\(명구\)](#) |
 [명05,명06란 단위\(환수/환산신청\)](#)

◎ 명세서 내역

명세서 검색: 00000 ~ 29999 [검색]

- 명세란을 클릭하시면 아래 명세란별 조정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명세서 내역에서 조회가 안 될 경우에는 지급불능된 경우 아닌지? 실조정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명세란	수권자	선사번호코드	요양개시일	내원일수	요양일수	의료급여 종별구분	조정금액	선사구분
1	김성명	A	2018-10-18	43	73	6	297	

◎ 명세서별 코드별 조정 내역

☐ 명세란	수권자	조정금액	반	조정사유 코드	분류코드명	액제신청자액 조정금액	분류코드	출번호
☐ 1	김성명	297	03	A	396 디아크롬투사발열			

◎ 선택 항목(복수가능)역

요양기관 문서번호: 문서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제출가능합니다.
 담당자: 김성명 전화번호: 02 - 777 - 8888

◎ 신청 내역

☐ 선택사유	원부유무	명세란	수권자	조정금액	선정금액	분류코드명	출번호
☐ N	O	1	김성명	297	297	396 디아크롬투사발열	

사유입력

I 선택사유
 V 선택 항목의 재심사 조정, 이의신청 청구 사유 및 내역을 기입합니다.
 (최대 1000자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저장 닫기

재출내역 관리보기 최종제출

(4) 이의신청 진행과정 조회 및 처리결과 확인

- 요양기관업무포털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진행과정 조회로 접속
- 접수번호, 원청구 접수년도 조회하여, 이의신청 진행과정 확인
 - 처리상태, 처리부서, 담당자 등 확인
- 재신청 및 반송신청
 - 조회결과 내용을 박스 체크하여 재신청 및 반송 신청 (단, 처리상태가 접수중일 경우만 반송 신청 가능)
- 처리 완료 건에 대해 결과 선택 시, 이의신청 결과 확인

통합검색		Q 검색	
2	업무안내	의료기준관리	진료비청구
1	정산관리	모니터링	자동차보통
3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정보화지원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시범사업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연내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진행과정조회 - 재심사조청구/환수/정산 - 이의신청/환수/정산 - 심사자료제출 - 이의신청(재심사/환수/정산)등 정산 결과(건설통보기관용) - 정산심사통보서조회(서면통보기관용)	- 심판청구 - 연내 - 심판청구(new) - 심판청구 진행과정확인 - 심판청구 심사자료제출	-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청구 - 연내 - 청구	- 진료내역확인요청 - 진료비확인요청 - 간급의료지원비 확인

Ⅱ

구입수량 사후관리 개요

Ⅱ

구입수량 사후관리 개요

01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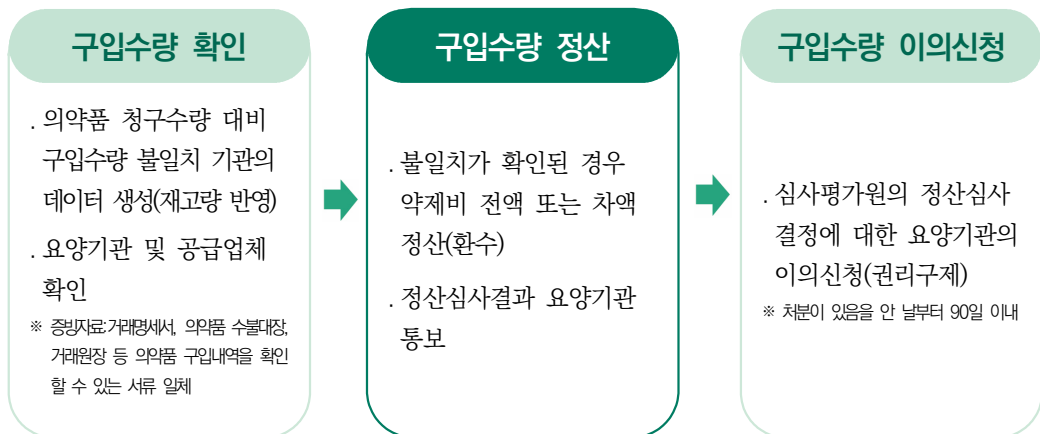
가. 개념

-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내역과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비교·분석하여 구입 없이 청구되거나 구입량과 청구량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의약품에 대하여 확인·정산하는 업무
 - (대상기관) 모든 요양기관
 - (관리주기) 반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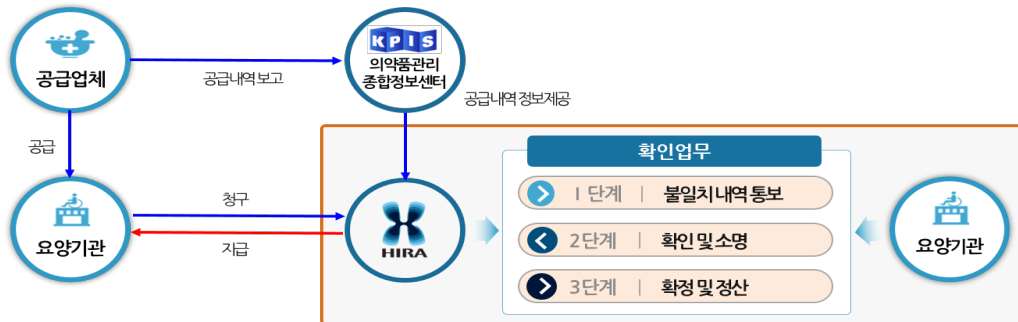
나. 관련근거

-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

다. 처리단계



요양기관 구입수량 사후관리 업무 흐름도



02 불일치 사례

- (사례1)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
- (사례2) 의약품 공급업체 착오
- (사례3)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

가. (사례1)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

○ 공급과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청구한 경우 ⇒ 전액 환수

공급업체			요양기관					
공급			구입			청구		
약품명 (코드)	단가	수량	약품명 (코드)	단가	수량	약품명 (코드)	단가	수량
공급 없음			구입 없음			△△정 5mg	48,557원	50개
						(6**10030)		

☞ 48,557원×50개=2,427,850원 환수

나. (사례2) 의약품 공급업체 착오

○ 구입내역은 있으나 공급내역 보고를 착오한 경우 ⇒ 환수 없음

공급업체			요양기관					
공급			구입			청구		
약품명 (코드)	단가	수량	약품명 (코드)	단가	수량	약품명 (코드)	단가	수량
공급 없음			△△정 5mg	48,557원	50개	△△정 5mg	48,557원	50개
			(6**10030)			(6**10030)		

☞ 해당 업체에게 공급내역 수정보고 하도록 안내

다. (사례3)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

○ 동일성분 내 비슷한 약품명의 약품코드로 청구한 경우 ⇒ 차액 환수

공급업체			요양기관					
공급			구입			청구		
약품명 (코드)	단가	수량	약품명 (코드)	단가	수량	약품명 (코드)	청구	수량
□□2mg	5,855원	10,000개	□□2mg	5,855원	10,000개	◇◇2mg	5,918원	9,000개
(6**700271)			(6**700271)			(6**001841)		

☞ 63원(5,918원-5,855원)×9,000개=567,000원 환수

Ⅲ

자주하는 질문 (FAQ)

Ⅲ

자주하는 질문(FAQ)

✓ 구입약가 정기확인 관련 일반사항

Q 1. 가중평균가란 무엇인가요?

- A** 분기별 구입한 의약품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입니다.
다음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동안 청구하면 됩니다.
- 가중평균가 > 상한금액인 경우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
 - 가중평균가 < 상한금액인 경우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산정
 - 분기별 구입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분기에 구입한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산정

Q 2. 요양기관에서 가중평균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A**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사전가중평균가」에서 의약품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의약품별 가격을 분기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공급분기 선택 후 조회)
- 다만, 사전 가중평균가 생성 후 공급내역보고가 됐을 경우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공급내역 보고 기준으로 생성이 되므로 요양기관에서 거래명세서와 확인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구입약가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관련

Q 1. 분기별 가중평균가(구입약가)가 원미만일 경우 단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산된 분기 가중평균가 원미만 단위에서 4사 5입하여 가중평균가로 산정하되, 1원 미만인 경우는 1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Q 2. 의약품을 구입한 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 가중평균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의약품을 구입한 후 반품이 이루어졌다면, 반품한 금액과 수량만큼을 구입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 예시

분기	구입일	구입/반품	단가	수량	비고	가중평균가(원)
'26. 1/4	'26. 1. 2.	구입	80원	100개		93원 $(80 \times 100 + 100 \times 200) / (100 + 200) = 93$ 원
	'26. 2. 1.	구입	100원	300개		
	'26. 3. 1.	반품	100원	100개		

Q 3. 2026.5.1.에 상한금액이 200원 이었는데 2026.5.31.에 150원으로 인하가 되었어요.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A 가중평균가가 150원을 초과한 경우 상한금액인 150원으로 청구 가능하며, 150원 이하라면 분기 가중평균가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중평균가가 상한가 보다 높아(150원 초과) 기존재고를 반품하고 새로운 가격으로 구입하셨다면, 단가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구입단가는 새로운 가격으로 구입한 날부터 즉시 적용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Q 4. 1분기 가중평균가 100원이었으나, 구입약가 적용기간인 5월 1일 의약품의 상한가가 인상되어 기존 재고량이 있는 상태에서 5월 1일에 인상된 가격으로 다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5월 진료분의 구입약가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재고량이 있는 상태에서 재구매 한 경우, 구입약가 산정은 분기 가중 평균가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 1분기 가중평균가 100원, 5월 1일 상한가 110원, 5월 1일 기존 재고량 200정이 있는 상태에서 110원으로 거래 한 경우,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단가는 1분기 가중평균가인 100원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입약가 확인 및 검증시스템 관련

Q 1. 불일치 품목 확인요청을 받았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요양기관 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으로 접속하여 해당 년도, 차수 선택 후 조회 하면 됩니다.

Q 2. 구입약가 확인대상 의약품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 중, 실제 구입한 가격과 청구한 가격 차이가 나는 의약품입니다.

Q 3. 구입한 내역 확인결과 약가를 착오 청구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요양기관에서 착오 청구한 경우 요양기관 확인결과에 '공급신고 맞음'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추후 구입약가 확정시 차액은 정산 됩니다.

Q 4. 공급업체가 공급신고한 공급분기와 규격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내역과 다른 경우, 구입약가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착오가 발생한 공급내역의 수정수량, 수정금액을 "0"으로 입력하고 요양기관 처리결과에 「공급신고 착오」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 행 추가하여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적용규격으로 공급내역 입력, 요양기관 확인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선택, 첨부파일에 해당분기 거래명세서 업로드 후 저장합니다.

Q 5. 공급업체가 공급신고한 공급수량과 금액이 거래명세서와 다른 경우, 구입약가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양기관 확인 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선택 후 수정수량, 수정금액란에 거래명세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파일에 해당분기 거래명세서를 업로드 하면 됩니다.

Q 6. 구입약가 확인 결과 요양개시일 이후 단가변경 된 건이나, 실제 의약품을 투약한 일자는 단가변경일 이후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투약일을 기재하지 않아 불일치로 산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가의 최초 투여(실시)일자를 변경일 기재란에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변경일 기재를 누락한 경우라면 해당 환자의 의약품 투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7. 단가변경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단가변경은 기존 재고량이 없는 의약품을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가변경 건이 많을 경우에는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의 단가변경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단가변경 업로드를 합니다.

그 외 단가변경 시점의 재고수불대장 및 단가변경확인서(공문, 요양기관장 직인 날인) 와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8. 2026년 1분기 구입내역이 없는 경우, 2026년 5~7월 진료분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 분기별 구입내역이 없을 경우, 의약품 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 가중평균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Q 9. 첨부파일 업로드 시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첨부파일 저장경로가 복잡하면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장경로를 간단하게 한 후 다시 업로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Q 10. 구입약가 안내(이메일, FAX, SMS)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메일)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좌측 상단 웹메일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팩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된 팩스번호로 팩스가 발송되므로 팩스번호 변동 시 업데이트하고 포털접속이 불가할 경우, 의약품정보조사부 (033-739-229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MS) 요양기관업무포털>진료비청구>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에서 가능합니다.

✓ 구입약가 정산 및 이의신청

Q 1. 구입약가 정산심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정산심사는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서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확정단가가 불일치한 품목 중 청구단가가 확정단가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Q 2. 구입약가 정산통보서를 받은 후, 구입내역에 대해 확인 착오 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 가능한가요?

A 수정되지 않습니다. 정산 통보 후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3. 구입약가 확인 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A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및 의료급여법 제30조(이의신청)에 따라 정산심사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9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4. 이의신청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A 「요양기관 업무포털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이의신청/환수/정산」에서 이의신청 대상을 선택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Q 5. 구입약가 확인 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그 후 권리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구입약가 확정 후 불일치로 인해 정산된 건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최종 확정 단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각건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Q 6. A의약품을 사용하였으나, 요양기관 착오로 구입한 적이 없는 B의약품을 청구하여, 전건 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이 경우,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B의약품은 요양기관에서 코드착오 청구로 확인되어 전액조정 된 건으로 실제 사용한 A의약품에 대하여 추가청구 하여야 합니다.

Q 7. “A코드”로 정산된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구입약가 확인에 따른 단가착오 “A코드”로 정산심사 된 의약품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단, 진료비 청구단계에서 전산조정 의약품(조정코드A)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8. 구입약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느 부서로 하면 되나요?

A 접수는 정산 부서로 하며(48p참조), 처리는 기관 종별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급종합, 종합병원, 의원, 약국은 본원 의약품정보조사부, 병원급은 지역 본부 고객지원부에서 담당합니다.
단, 서면확인 세부 유형에 따라 정산 담당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요양기관 의약품 청구 가이드 (구입약가 · 구입수량)

부록

01

사전가중평균가

1) 화면 접속 경로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사전가중평균가

2) 조회화면

- 의약품 공급업체 및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의약품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
 - 조회조건: 요양기관별, 약품코드별, 공급분기별
 - 조회내용: 약품코드별 가중평균가, 구입분기, 적용진료년월, 구입수량, 구입금액 확인
 - 세부 공급내역: 표준코드별 의약품 공급보고일자, 구입일자, 구입처(사업자번호), 약품명, 구입단가 등 확인
 - 엑셀 다운로드 가능
 -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내역 확인 및 청구단가 자료로 활용 가능
 - ※ 사전가중평균 생성 이후 공급업체에서 수정·추가 보고한 내역은 반영되지 않음
 - ※ 공급업체 신고내역을 감안 생성된 가중평균가로 공급업체 신고내역 변경으로 가중평균가가 변동될 수 있음

요양기관		가호북대병원(000000000)		약품코드				Q						
구입분기		☐ 전체 ☒ 2024 ☐ 년도 ☐ 분기		진료년월		2025-02 ~ 2025-04		Q 조회						
※ [주의] 해당 데이터는 실시간 업데이트된 자료가 아니며, 수정 및 반영에 따라 추후 가중평균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청구 시 '약품코드별 가중평균가'를 참고하십시오. ※ ※ 최종적대 구입분기: 2024년 4분기														
조회수:		0		도움말		엑셀저장								
연번	환산 구분	표준코드	약품코드	품명	구입분기	적용진료년월	적용규격	구입수량	총구입수량	총구입금액	표준코드별 가중평균가	약품코드별 가중평균가	성인가	면역사업자
※ 세부 구입내역														
연번	정보센터 보고일자	구입일자	구입처(사업자번호)	품명	표준코드	적용규격	구입수량	총구입수량	총구입금액	구입단가	종금구분	계산대상여부		

의약품 입고내역 확인

 개요

- 공급업체의 보고내역을 요양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요양기관 구입량 · 재고량 관리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사후관리 불일치 경감을 도모

 이용방법

(1) 의약품입고조회 화면 접속 경로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의약품입고조회

(2) 의약품 구입내역 확인 방법

- 공급일자 : 거래한 내역이 포함된 1개월 내의 기간을 기재하여 조회
- 조회조건 : 공급일자, 공급업체, 약품코드
- 조회내용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약가코드, 표준코드, 포장내충수량(규격), 포장단위원산충수량, 입고일자(공급일자), 공급금액 등
- 의약품입고조회 화면 내 「용어설명」 버튼 참고

[illegible]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한약제: 상한금액

한약제 외의 약제: 구입금액

〈삭제〉

치료재료: 구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4호, 2014.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약제에 대한 비용의 결정 등

제2조(구입약가의 산정) ① 요양급여에 사용된 약제의 구입금액(이하 “구입약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분기별 구입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이하 “분기 가중평균가격”이라 한다)을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의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다만,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한다)에 따른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2. 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제 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 가중평균가격을 계속하여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다만,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 또는 상한금액 인상전에 구입하였던 약제로서 재고량이 없어 상한금액 인상 후 새로 구입하였음을 요양기관에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약제의 실구입가격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3.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하여 사용한 약제에 대하여는 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 범위에서 최초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산정되어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4. 요양기관이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량이 없는 약제를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처음 구입하여 사용한 약제로 보아 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 범위에서 새로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산정되어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5. 분기 가중평균가격 산출시 적용된 약제구입량보다 다음분기 둘째달부터 3개월간 동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상환받는 약제의 사용량이 많을 경우, 구입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약제의 구입약가는 새로운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이 산정되어 적용되기 전까지 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 범위에서의 실 구입가격으로 산정한다. 다만, 구입량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이 월의 둘째날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산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표"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되므로 구입약가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료의약품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에 따라 산정하고, 「약사법」 제41조에 따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는 해당 약제의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구입약가 및 원료의약품의 실구입가격으로 산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점수표 중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되므로 구입약가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기관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청구서·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약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급 내역정보 등을 활용하여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 내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내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입약가 검증체계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분석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확인할 수 있다.

1. 서면확인 :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약제 구입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
2. 현지확인 :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자료의 확인, 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

④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요양기관은 제출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요양기관이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2. 민원, 언론 등을 통해 약제 구입과 관련하여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3.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⑦ 제3항에 따른 구입약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대상 요양기관과 거래한 내역이 있는 약제 공급업자에 대하여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3항과 제7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⑨ 그 밖에 구입약가 확인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공급약가의 조사 등) 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및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 공급업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급약가(의약품 공급업자가 요양기관에 약제를 공급한 공급금액을 말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사후관리의 방법, 대상기관의 선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 등

제4조(구입치료재료대의 산정) ① 요양급여에 사용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이하 “구입치료재료대”라 한다)은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이하 “치료재료상한금액표”라 한다)의 상한금액 범위에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입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표 중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구입치료재료대의 사후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구입치료재료대 산정의 정확성 여부의 확인과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10조에 따른 상한금액의 조정 등을 위하여 장관은 정기 또는 수시로 요양기관의 치료재료의 실구입가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은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이와 관련된 요양기관·치료재료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기 사후관리대상기관과 수시 사후관리대상기관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③ 정기 사후관리 대상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의 구입자료를 기준으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 가.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구입가격이 높게 신고된 품목이 많은 요양기관
- 나.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의 조작이나 오류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 다. 요양기관과 치료재료공급업자의 자료상 구입가격이 상이한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

2. 요양급여비용총액 대비 구입치료재료대 비율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요양기관

3. 치료재료의 구입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빈번하게 변경하는 요양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치료재료공급업자

④ 수시 사후관리대상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사후관리가 의뢰된 요양기관

2. 치료재료 구입 시 과도한 가격할인, 구입량할증, 이면계약 등 불공정 거래행위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

3. 민원제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구입 치료재료대 관련 민원이 발생한 기관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치료재료공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장관이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기관

제6조(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시 확인내역) 제5조에 따른 구입치료재료대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과 치료재료공급업자 또는 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품목별 실거래가격의 내역(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거래단가, 계약서등)
2. 요양기관과 치료재료공급업자 또는 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할인, 할증유무 등 기타 실거래내역(할인시에는 할인율에 따른 구입가)
3. 요양기관과 치료재료공급업자 또는 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치료재료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금품류 수수내역

제7조(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시 자료의 제출)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대상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또는 문서, 증빙 자료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양기관 및 치료재료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 치료재료공급업자는 치료재료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에 대하여 거래일자, 거래처, 거래수량, 거래총액이 정확히 기재된 품목별 매출원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시 행정조치) ① 장관은 사후관리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 등으로 인하 조치. 다만,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된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청구가격보다 실구입가격이 낮은 경우에 있어 청구가격과 실구입가격의 차액을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하는 조치
- ② 사후관리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약제 및 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5호, 2023.12.29. 일부개정)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을 요양기관, 질병명, 진료분야, 청구항목 단위 등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심사방법을 정하여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 관계법규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및 기준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단,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처방 투여 약제에 관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3.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내역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③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함에 있어 의학적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지침을 공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거나, 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공고한 이후의 진료분부터 심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⑤ 심사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지침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전문 분야별로 널리 인정되는 교과서나 임상진료지침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절차를 거쳐 그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른 심사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 전문심사위원회의 위원, 소속직원 등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산화된 방법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적정한 요양급여 실시 및 심사청구를 위해 제4조 제1항에 따른 분석 과정에서 요양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을 대상으로 분석 정보제공 및 방문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2. 영 제22조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금액
3.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가입자등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심사평가원장이 심사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급여비용
6. 기타 명백한 청구 착오 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

요양기관 의약품 청구 가이드

(구입약가·구입수량)

발행일 2026년 4월

발행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

디자인 및 인쇄 (주)대유기획인쇄 02-2671-8845